



금융감독원

수신 강용O (57934 전남 순천시 봉화2길 119, O아파트 O동 O호)

(경유)

사본수신

제목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 공시송달(엑셀금융서비스(주) 소속 보험
설계사 강용O)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2020.11.16.~2020.12.8. 기간 중 부문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 등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불임 1.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1부.
- 2. 안내장 1부.
- 3. 의견진술서(서식) 1부.
- 4.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자 진술예정서(서식) 1부.
- 5.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권익보호 신청 안내 1부. 끝.

금융감독원장



담당부서	보험영업검사실	검사1팀			
05/07			05/07		전결 05/07
검사역	박성현	팀장(S)	박형신	실장	박진해

합의자

일상감사

시행 보험영업검사1팀-621 (2021.05.07.)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267 팩스번호 02-3145-7289 / dodo7983@fss.or.kr / 비공개(5,6)

<붙임1>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본 조치예정내용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발생합니다.

1. 당사자	성명(명칭)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
	주 소	전남 순천시 봉화2길 119, *아파트 *동 *호
2.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p>1.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사항)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함에도</p> <p>가.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은 2019.7.5.~2020.5.18.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등 2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수수료 2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40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5.2.~2020.2.28. 기간 중 에이아이손해보험 ‘무배당에이아이참기특한상해보험’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 3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4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위 귀책사항 1.(가)항과 관련하여 귀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모집한 것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음</p>
3. 조치예정 내용		<p>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위원회에 설계사 업무집행 일부 정지 건의</p>

4.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5.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기관명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담당검사역	김종현 선임검사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27번지)	전화번호	02-3145-7268
		전자우편주소	apple@fss.or.kr	모사전송	02-3145-7289
		기한	2021년 5월 21일까지		

※ 유의사항

가. 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나. 위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치예정내용

-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구 분	종 류
기관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영업·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임원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요구, 해임권고, 개선 ○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문책경고
직원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직 ○ 정직 ○ 감봉

- 과징금·과태료
 - 「보험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임
- 조치생략
 -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치생략

라.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검사역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①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리인 관련 업무 등 면책특례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 관한규정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제면책신청서를 이용한 면책신청 가능

또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경우에는 통보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를 통한 관련 직원 등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2.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참고하시어 관련 직원 등에게 동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이와 관련한 사전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바.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제제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임 의견 진술서 서식에 제제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9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처에 신청하여 제제심의위원회 부의예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이 진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제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예정내용 및 배포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제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예 : 목요일 개최시 월요일까지) 의견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 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중인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그밖에 궁금한 사항(과태료 금액 등 처분예정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감독원

수신 신규O (4607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8번길 37, O호)
 (경유)
 사본수신
 제목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 공시송달(엑셀금융서비스(주) 소속 보험
 설계사 신규O)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2020.11.16.~2020.12.8. 기간 중 부문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 등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1부.
- 2. 안내장 1부.
- 3. 의견진술서(서식) 1부.
- 4.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자 진술예정서(서식) 1부.
- 5.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권익보호 신청 안내 1부. 끝.

금융감독원장



담당부서 보험영업검사실 검사1팀
 05/07
 검사역 박성현 팀장(S) 05/07 박광신 실장 전결 05/07 박진뢰

합의자

일상감사

시행 보험영업검사1팀-622 (2021.05.07.)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267 팩스번호 02-3145-7289 / dodo7983@fss.or.kr / 비공개(5,6)

<붙임1>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본 조치예정내용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발생합니다.**

1.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8번길 37, *호
2.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p>1.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사항)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함에도</p> <p>가.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은 2019.1.7.~2020.4.8.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수료 2.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9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5.23.~2020.3.10.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배당메리츠운전자보험'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1.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2.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가.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은 2018.2.7.~2019.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수수료 6.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p>

	⇒ 위 귀책사항 1.(가)항과 관련하여 귀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모집한 것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으며, 2.(가)항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로서 실제명의인이 아닌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음				
3. 조치예정 내용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5.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기관명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담당검사역	김종현 선임검사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27번지)	전화번호	02-3145-7268
		전자우편주소	apple@fss.or.kr	모사전송	02-3145-7289
		기한	2021년 5월 21일까지		

※ 유의사항

가. 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위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치예정내용

-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구 분	종 류
기관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영업·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임원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요구, 해임권고, 개선 ○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문책경고
직원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직 ○ 정직 ○ 감봉

- 과징금·과태료
 - 「보험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임
- 조치생략
 -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치생략

라.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검사역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①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리인 관련 업무 등 면책특례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 관한규정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제면책신청서를 이용한 면책신청 가능

또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경우에는 통보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를 통한 관련 직원 등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2.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참고하시어 관련 직원 등에게 동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이와 관련한 사전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바.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제제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임 의견 진술서 서식에 제제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9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처에 신청하여 제제심의위원회 부의예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이 진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제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예정내용 및 배포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제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예 : 목요일 개최시 월요일까지) 의견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 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중인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그밖에 궁금한 사항(과태료 금액 등 처분예정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 내 장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 개인회생·파산 중인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② (전략)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5. 과태료 부과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과태료 금액 등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의 견 진 술 서	
1.조치예정 내용	
2.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전화 :)
3. 의 견	
4.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5. 출석 의견 진술 여부	제재심의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예정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예정 <input type="checkbox"/> ※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자 : <붙임1>의 조치예정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는 2021년 5월 27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심의 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 귀하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가급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 상기 <input type="checkbox"/> 란에 표시해주시기 바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중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는 단독진술을 원하실 경우 의견진술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자 진술예정서

1. 의견진술자	○○은행 부행장 △△△			
2. 의견진술자 주요 경력	1. 19△△. ○○ 학교 졸업 2. 19△△. ○○은행 입사 3. 20△△. ○○은행 부행장			
3. 진술예정 내용 (요지)	1. 금감원은 「○○법」 제○조에 위반하여----- 조치 예정 통보하였으나, 가. 2007.7.8.~2008.10.2. 기간중 △△(주)에 대하여 -----하여 583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 며, 나. -----하였는 바, 금감원의 제재는 타당하지 않음			
4. 제출할 입증자료	기 제출한 증거 이외의 새로운 입증자료			
5.기타	전화번호	3145-xxxx	모사전송	3145-xxxx
	대리인	xxx 법무법인 xxx (Tel :)		

<참고>

제재심의위원회 진술방법 및 유의사항

-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실 경우,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발표자료 등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고자 할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전일 정오까지 해당 발표자료 등을 검사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장 내에서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일체의 촬영, 녹음, 녹화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장 및 소속, 직위성명 진술

- 검사국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장에 동시에 입장하십니다.
- 회의장 입장 이후,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요청하시면, 본인의 직장명, 직장내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 술

- 위원장께서 의견진술을 요청하시면 사전에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관련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국 의견에 대해 반박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 관련 내용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께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최종적으로 진술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 의견진술이 종료되고 위원장께서 퇴장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검사국과 동시에 회의장을 퇴장하시면 됩니다.
- 퇴장 이후에도 제재심 위원들의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들의 최종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권익보호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17.12.12. 발표)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권익보호관」은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되며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고지)서」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은 붙임 「권익보호 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권익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업무자료/공통자료에 게시
- 신청이 접수되면 「권익보호관」이 연락을 드리며,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권익보호관」(02-3145-7888) 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02-3145-7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익보호 신청서」를 보내실 곳

주소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재심의국)

이메일 : protect@fss.or.kr

<참고>

권익보호 신청서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귀중

2021

본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익보호를 신청합니다.

1. 신청인(성명·회사명, 소속, 직위) : (서명·날인, 직인)
2. 대표자·법률대리인 성명, 소속, 직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3. 연락처 :
4. 사전통지일 :
5. 조치예정내용 :
6.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7. 해당 검사부서 및 담당검사역 :
8. 신청(소명)사유 : (별도 문서 첨부 가능)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검사부서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음)

※ 4~7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음